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목 차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제1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1.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09

1.2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12

1.3 우선구매 절차 14

1.4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공고 24

1.5 2021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25

제2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2.1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28

2.2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35

2.3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38

2.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급역량 강화 지원(기반조성) 44

제3장 공공기관 구매 우수사례

3.1 (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52

3.2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67

3.3 (지방공기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78

3.4 (공기업) 한국남부발전 87

참고자료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106

2. e-store 36.5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 107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114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119

5. 자주하는 질문[FAQ] 123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제1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1.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2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1.3 우선구매 절차

1.4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공고

1.5 2021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 1 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 지역 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보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또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기업 네가지 목적

1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은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일자리는 최고위 복지이며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다.

2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 예술로 행복을 전한다.

3 지역사회에 이바지

사회적기업은 작지만, 느리지만 명품을 만든다.
창의성과 열정이 다양한 전문성과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4 따뜻한 공동체 형성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알고 응원을 보내는 아름다운 이웃이 있어 사회적기업이 더욱 성장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다면,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든 사회적기업을 시작할 수 있다.

1.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 목적 및 근거

목적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2조)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 공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참고: 21년 구매실적 및 22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단위 : 개)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 특별법인	합계
	광역	기초								
55	17	226	17	36	95	218	156	35	6	861

3.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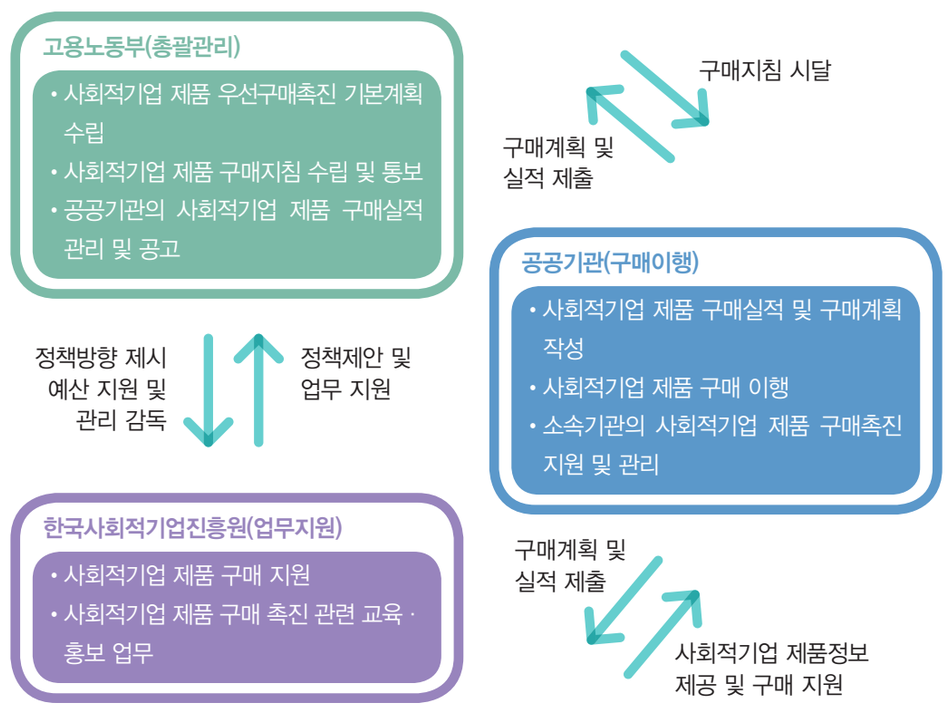

1.2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사회적기업 제품의 정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인증 사회적기업 : '22년.9월 기준 4,090개소 인증, 3,436개소 활동 중(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며, 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 확인방법은 p16 참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표시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인증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 인증)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인증기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유급 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상법상회사 · 합자조합인 경우 :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 · 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구매실적 인정기준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수행 과정 및 바우처 사용 등을 통한 간접적 구매도 실적으로 인정

  ①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구매한 실적

  ②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비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기업(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 인정

    * 단, 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자치단체에서 발행된 **바우처** 등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에 사용**되어 대금이 지급된 실적 인정

    * 단,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사용된 바우처 실적만 인정되며,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1.3 우선구매 절차

수요발생 → **1단계** 구매대상 품목 확인 → **2단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3단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1 1단계 : 구매대상 품목 확인

(온라인) e-store 36.5(www.sepp.or.kr)의 '사회적경제 상품몰'

- **(통합검색으로 찾기)** 화면 중앙 상단의 통합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명 및 기업명 등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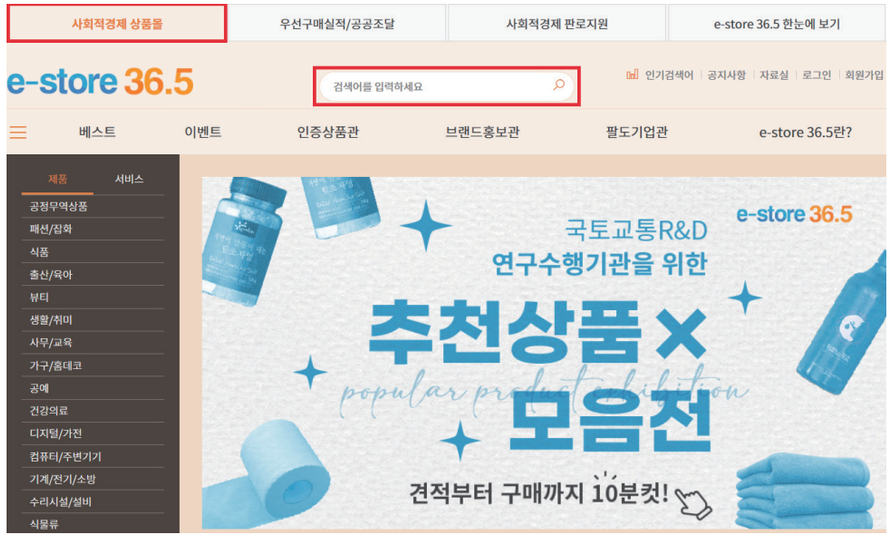

- **(상품분류로 찾기)** 좌측 상단 메인메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선택 후 상세검색 창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

- **(인증유형별 검색)** 화면 중앙 상단 [인증상품관]을 통해 인증기업 및 상품 유형별 검색 가능

- **(인기상품 확인)** 화면 좌측 상단 [베스트] 인기상품 창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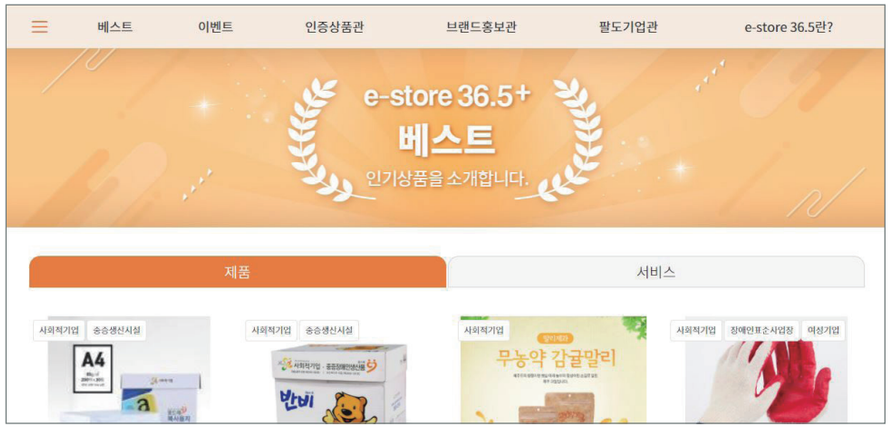

- **(기업으로 찾기)** [우선구매 실적관리] → [우선구매 공지사항/우수사례]에서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 단, 공공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후 리스트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오프라인)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 지역별 매장 입점 현황은 e-store 36.5(sepp.or.kr) 접속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 [공동판매장(Store 36.5)]에서 확인 가능

〈스토어 36.5 현황(86개소, 22.10월 기준)〉

연번	지역	매 장 명	주 소	연 락 처
1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2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3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쉐도르 3차 지하1층	070-4432-3792
6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7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 7호선 4번 출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8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9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10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11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 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12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13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14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15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16	서울	방화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5 방화6단지 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17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18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 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연번	지역	매 장 명	주 소	연 락 처
19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레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20	서울	백련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21, 1층(응암동)	02-6748-6233
21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22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23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24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생협	02-3423-0518
25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26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27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28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29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30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31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32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161
33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34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35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36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37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벨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38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39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40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41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36.5제주점	064-749-2365
42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 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43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연번	지역	매 장 명	주 소	연 락 처
44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45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46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47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48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49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50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51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52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53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54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55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56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57	경기	수원 영통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58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59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60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61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62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63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64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65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66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67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68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69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70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연번	지역	매 장 명	주 소	연 락 처
71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카운티아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72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73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74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75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76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77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뜨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78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79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80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닻별	033-763-2923
81	강원	원주 후레쉬 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82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83	강원	춘천쿱 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쿱박스〉	033-256-0765
84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5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6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60번길 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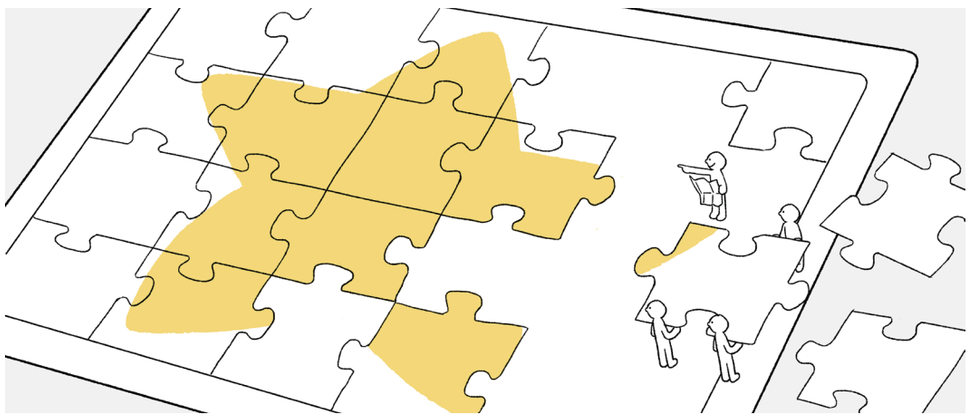

공공구매 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 상담 가능 (☎1566-5365)

〈공공구매 수요 품목 예시〉

구 분	품 목	구매 사례
격려품/기념품	▶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세제, 숯 ▶ 건강식품, 꿀, 차, 커피, 제과세트(쿠키, 빵, 떡) ▶ 된장, 고추장, 참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 명함지갑, 카드지갑, 다이어리, 핸드폰케이스 ▶ 양말, 넥타이, 손수건, 티셔츠, 가방, 모자 ▶ 공연표(뮤지컬, 연극, 국악), 공정여행 티켓 ▶ 자전거	각종 행사, 기념일 등
공연	▶ 오케스트라, 뮤지컬, k-pop, 국악, 타악연주	행사 시 공연
도시락	▶ 출장뷔페, 도시락	행사시 식사
식자재류	▶ 축산물, 유기농 농산물, 두부,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
사무실 소모용품	▶ 복사지, 토너카트리지,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 LED 조명, 커튼, 블라인드 ▶ 결재판, 파일철, 봉투, 종이컵, 화장지, 박스, 장갑	상시
사무실 기호식품	▶ 건강음료, 차, 커피, 쿠키, 빵, 떡, 초콜릿, 쨈	상시
의류	▶ 유니폼	회사 유니폼
해외출장 및 연수	▶ 공정여행, 전통문화체험 ▶ 영어·중국어·일본어 회화수업	출장 및 연수
청소/환경 용역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 세차, 도배·장판	건물 관리
인쇄/IT/디자인 용역	▶ 현수막, 리플릿, 명함, 어깨띠, 기념패 ▶ 영상물, 웹디자인, 공간 디자인(건물외벽 등)	홍보물 등 제작
기관 행사 축하용	▶ 꽃배달, 가구	개소식 등
보건/의료	▶ 예방접종, 건강검진	직원 건강관리

나라장터내 '사회적가치실현 기업 인증몰' 이용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인증몰 통한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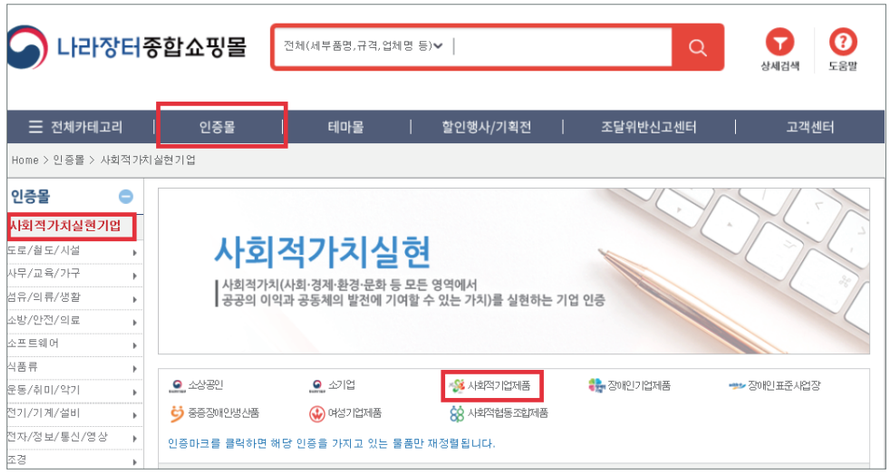

2 2단계 : 구매 및 계약방법

구매방법

-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비사회적기업)과 계약체결 후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

〈간접구매 절차〉

물품 용역 계약 → 적용가능 대상품목 확인 → 계약업체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하도록 추진 → 계약업체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구매실적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불요, 요청시에만 제출)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원까지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입찰자격 평가

- 낙찰자 심사 ·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
  - 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별 구매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3 3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에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 '공공기관 협업사업 및 희망상품 추천요청 기능'을 활용하여 구매 및 사업 추진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수요빈도가 많은 상품을 조달청이 미리 계약하여 등록한 사이트) 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활용 구매

구매실적 및 계획의 제출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

1.4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공고

전년도 구매실적 집계 방법

- **(국가기관 · 자치단체 · 교육청)** 재정시스템인 '디브레인(국가기관), e-호조(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을 통해 집계 가능
- **(그 외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명단을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집계

  * e-store 36.5(www.sepp.or.kr)의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정보] - [우선구매 공지사항/우수사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명단'을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

당해연도 구매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예산 및 구매수요,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 수립

  *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구현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지표에 반영

제출 방법 및 시기

- **(제출방법)** 최상위 단위 기관이 산하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제출

  * 교육청 예시: 광역 단위 교육청이 소속 기초단위 교육청의 실적을 합산하여 제출

- **(제출시기)** 매년 2월 말일까지 e-store 36.5(www.sepp.or.kr)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입력

  * 공공기관 회원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 실적관리자 권한 획득 → 실적 입력

공고(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기한(2월말일)까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고 시 명단 공개

1.5 2021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총괄

- **(2021년 실적)** 1조 8,171억원, 총 구매액의 2.77%

  * 코로나19 백신 구매액(3.2조원) 제외 시 실질적 구매율은 2.92%

- **(2022년 계획)** 2조 986억원, 총 구매액의 3.29%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2021년 실적	65,501,165	1,817,072	2.77
2022년 계획	65,501,165	2,098,574	3.29

*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2.04)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총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구매율 (B/A)	총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구매율 (B/A)
국 가 기 관	16,629,138	130,081	0.78	13,883,654	130,109	0.94
자 치 단 체	10,488,598	657,739	6.27	10,417,633	696,927	6.69
교 육 청	7,211,592	204,212	2.83	7,401,619	207,185	2.80
공 기 업	15,287,645	463,533	3.03	15,907,886	663,717	4.17
준정부기관	5,632,024	211,464	3.75	5,672,424	207,276	3.65
기타공공기관	7,083,058	79,354	1.12	7,134,168	113,596	1.59
지방공기업	2,647,630	64,690	2.44	2,726,211	72,880	2.67
지방의료원	239,520	5,127	2.14	271,951	6,568	2.42
특 별 법 인	281,960	872	0.31	353,161	315	0.09
합 계	65,501,165	1,817,072	2.77*	63,768,706	2,098,574	3.29

*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2.04)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제2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2.1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2.2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2.3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2.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급역량 강화 지원 (기반조성)

제 2 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2.1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 제도 도입방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에 의한 견적을 통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확대되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구매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러한 효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추진(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은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였음.
  - 2018년 7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3)") 및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능함 (2018년 7월 24일 시행)
  -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도 2018.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5"의"다)")이 가능토록 하고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제1항제2호) 가능함 (2018년 12월 4일 시행)
  - 다만, 상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됨

    *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는 타 영세업체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이 30%이상 고용된 기업에 한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참고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참고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참고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적용방안 및 검토사항**
  -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으로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의 확대는 동종 유사 물품을 공급하는 타 우선구매 대상과의 차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각 지역내에서 구매 강점을 보이고 있는 물품, 용역에 대해 일정 고용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 구매건에 대한 수의계약 활성화를 검토할 수 있음
  - 실제 지자체의 구매 또는 계약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매상황 하에서 각 공공기관(지자체)별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 일정고용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추진사례**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1) 제정목적 및 적용기관

(1) 제정일자 : 2014. 5. 14

(2) 제정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제1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희망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 기업의 근로자 권리 보호, 계약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조달 조례 제정

(3) 적용기관

-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자치구 및 우리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본 조례 준용 가능

2) 주요내용

구 분	조문 내용
제6조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중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준수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해 입찰참가기회 확대, 우선구매 촉진
제8조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 ▶ 기업의 사회적책임 여부류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제9조	서울시와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임금 수준을 보상해야 함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내용 확인·지도
제10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전 과정 공개

2.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1) 제도 개요

(1)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 정의

-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 및 소기업(제2조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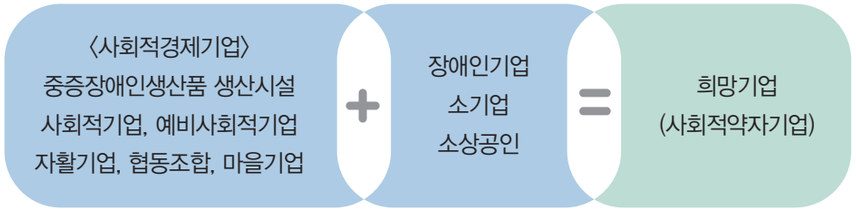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개념

-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희망기업의 생산 제품을 공공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희망기업의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실적 확대 방안

(1)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금액 범위에서 희망기업 제품 우선 구매

(2) 사회적경제기업과 희망기업 입찰참가 기회 확대(제7조1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실시(제7조2항)

※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제7조3항)

구분	기업 유형	금액 범위
1인 견적 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모든 금액 수의계약 가능 (직접 수행 · 생산하는 용역 · 물품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일상 경비	희망기업	1천만원까지 일상경비 집행 가능 (부가세 포함)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여성기업은 조례에 따른 희망기업은 아니나 편의상 위 분류표에 포함

2.2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평가방법 활용**
  -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과 용역의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수의계약이상 규모인 경우 물품은 적격심사제도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 용역의 경우는 적격심사제도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주로 적용됨
  - 특히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구매 건인 경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용역**의 경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의 경우는 조달청의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고 자체 조달을 하는 경우는 개별 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경우 기술용역은 행정자치부 예규 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기준을 적용함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평가방법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등록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들이 1억원 이상 물품을 납품 요청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수요기관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단일 유형의 종합평가방식과 4가지 유형의 표준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에 우선구매 확대 관점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표준평가방식 중 **"사회적 약자지원(표준평가방식 Ⅲ)"** "수요기관 선호도(표준평가방식Ⅳ)"유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 선정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사회적 약자지원 표준 평가방식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에게 기본 평가점수 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우선구매대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평가방법을 선택하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요기관의 자체의 평가위원회 품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선호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이 경우 상대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제공하는 청소, 사회복지, 문화 관련 용역은 공공계약 관점에서 일반용역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제도의 기본평가항목 또는 신인도 평가항목에 사회적기업 관련 가점의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의 물품 또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의 신인도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과 동일하게 사회적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0.3~0.5점까지 부여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하고 있음.

구분	물품적격심사	일반용역적격심사	공사적격심사
조달청	2점	2점	사회적기업 공동수급 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
서울특별시	1점	1.5점	-
경기도	1점	2점	-
세종자치시	1점	2점	-
부산광역시	1점	2점	-
광주광역시	1점	1점	-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통)	1점	-	-
LH공사	0.5점 사회적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시(10%이상) 0.5점	1점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3점 -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점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1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5% 가산(50억원 이상)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1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50억원 미만)
한국수력원자력	2점	2점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
한국도로공사	2점	2점	2점 사회적기업 시공 비율 10% 이상 시 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의 10% 가산(공동수급체 점수 취득점수 기준)

- 또한 신인도 가점의 형태는 아니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기본 평가항목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중심 평가) 평가시 사회적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로서 시공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음

  * 신인도 가점 적용의 실효성과 사회적기업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 등이 사회적기업과 공동수급체(사회적기업의 참여비율 최소 30% 이상 등으로 기준설정)를 구성하는 경우 신인도 가점을 참여비율이 아닌 가점의 배점한도만큼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

2.3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설정 현황 및 시사점**
  -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평가에서 정부정책지원 차원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의무고용기업(단체)제품, 녹색제품 등의 8개 유형이 있음
  - 이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이며 현재 정부정책지원 평가항목에서 만점 비중은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구매총액의 3%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목표치(최저 1.5%에서 최고 3.3%로 17개 광역시도별 구매여건을 고려한 차등)를 충족하는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는 해당 기업별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2%를 초과하면 만점을 부여하고 있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평가주체 : 기재부)

* 출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 가중치 및 평가기준 (2021.12월)

평가지표	1-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50점)
측정산식	◎ 당해연도 제품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 (만점 3%) ■ X = ('22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22년 제품 구매 총액) × 100(%) 〈평정점(P) 산출 공식〉 ■ $X \geq 3$인 경우, P=50 ■ $X < 3$인 경우, P=50×(X/3) * '제품 구매 총액'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 총액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기준 참조)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공사 구매액 1. 당해연도 제품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 : 이행도(1-1) 및 향상도(2-1) 각각 만점 부여 2. 향상도(2-1)가 30.0% 이상인 경우(만점기준 대비 10%p 초과 달성) : 초과 달성분에 따라 이행도(1-1)에 가점 부여 * 초과 달성분에 대한 가점 산출식 : A-20.0(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근거/자료	○ 구매실적 자료

평가지표	2-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향상도(50점)
측정산식	◎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대비 당해연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 (만점 20%) ■ A = ('22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21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21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00(%) 〈평정점(P) 산출 공식〉 ■ A≧20%인 경우, P=50 ■ 0%<A<20%인 경우, P=A×(5/2) ■ A≦0%인 경우, P=0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공사 구매액 * '22년 신규 평가기관의 경우 동 지표를 제외한 '이행도'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1. 당해연도 제품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 : 이행도(1-1) 및 향상도(2-1) 각각 만점 부여 2. 향상도(2-1)가 30.0% 이상인 경우(만점기준 대비 10%p 초과 달성) : 초과 달성분에 따라 이행도(1-1)에 가점 부여 * 초과 달성분에 대한 가점 산출식 : A-20.0(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근거/자료	○ 구매실적 자료

자치단체 합동평가(평가주체 : 행안부)

* 출처: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2022.3월)

①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② 평가 지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③ 측정 방법	○ **산식** - 사회적경제 구매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시설을 인증(확인 및 지정 포함)받은 기업에서 구매한 사회적경제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산식 설명** - 사회적경제 구매율 * 총 구매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 용역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사회적경제 구매액 : 사회적경제(8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총 구매액: '22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액: (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공사)의 구매액 ○ **지역별 목표치**(%): 지역별로 상이함 〈주의〉 • e-호조시스템상 표기: 사회적기업 구매액 "물품·용역·공사" • 단, '일반'으로 표출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중 구매와 관련 있는 실적(예: 청소용역 등)은 구매액에 포함 • '일반'으로 산출되는 실적 중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는 구매와 관련이 없으므로 구매실적에 미포함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2.12.31.		
④ 시스템 구현 서식	○ **사회적경제 구매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 구매액 (A)	사회적경제 구매액									구매율 (B/A)×100
		계 (B)	자활용 사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중증 장애인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⑤ 연계 시스템	e호조시스템(지방재정시스템)
⑥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⑦ 증빙 자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e호조 자동집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업DB와 e-호조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 비교 산출 - (e-호조 미집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업DB와 해당 지출 건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구매내역 자료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평가주체 : 행안부)

* 출처: 2023년도(22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2022.1월)

지표명	지역상생발전				
대분류	사회적 가치			중분류	사회적 책임
가중치	2.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
지표정의	○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구매실적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2.0점)				
세부 평가방법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구분	득점 산식	비 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frac{X}{2\%} \times 2$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 용역 구매율(%) ※ 2%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2 부여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구매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 2021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수요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3% 초과 구매기관은 국가기관 10.9%(6/55), 공기업 69.4%(25/36), 준정부기관 87.4%(83/95), 기타공공기관 35.3% (77/218), 특별법인 0.0%(0/6)로 나타났으며 국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달성(평점 만점비율 3%) 비율은 평균 46.63% 수준으로 2019년 대비 약 10%p 구매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는 구매금액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은 지역별로 목표치가 1.5%~3.3%까지 차등 설정(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역별 목표비율과 사회적경제 관련 8종 우선구매대상 실적 종합평가)되어 각각 이를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100.0%(17/17), 기초지자체 73.5%(166/226), 교육청 64.7%(11/17)인 것으로 나타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구매금액 기준 만점평정비율 2%를 초과하는 지방공기업은 41.0%(64/156)로 나타나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달성기관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구매목표율이 1% → 2% 상향에 따른 영향, 1%기준으로는 유사한 수준

- 한편, 2022년 구매계획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3%를 초과하는 기관이 국가기관 7.5%(4/55), 공기업 83.3%(22/36), 준정부기관 91.6%(74/95), 기타공공기관 31.9%(71/218), 특별법인 0.0%(0/6)로 평균 42.9%의 공공기관이 3%이상 구매계획을 수립함.

- 수요기관 유형별 2022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1.75%(2020년 1.3%), 공기업 4.51%(2020년 3.6%), 준정부기관 4.87%(2020년 4.5%), 기타공공기관 3.22%(2020년 2.7%), 특별법인 0.64%(2020년 0.0%)로 나타나 국가기관과 특별법인을 제외한 다수를 차지하는 공기업 등에서는 만점 평정 구매비율(3%) 초과 설정 추세와 동일한 평균 구매계획 비율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0년 대비 각 기관유형별 구매목표 계획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음도 확인되었음.

- 한편 2022년 구매계획 기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비율인 1.5%~3.3%까지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100.0%(17/17), 기초지자체 61.1%(138/226), 교육청 94.1%(11/17), 지방공기업 84.8%(118/156), 지방의료원 58.8%(17/35)로 평균 66.7%로 2020년 계획보다는 약 20%p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2020년 계획수립 시 만점 평점비율이 1% 대비 평균 2배 이상 상향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상향된 구매실적 평가기준 충족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반영한 계획수립으로 판단됨.

- 수요기관 유형별 2022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5.57%(2020년 3.1%), 기초지자체 6.93%(2020년 6.1%), 교육청 2.57%(2020년 1.9%), 지방공기업 4.06%(2020년 2.4%), 지방의료원 4.48(2020년 4.9%)로 만점 평정 구매비율 1.5%~3.3%를 모두 초과 설정 추세 대비 평균 구매계획 비율이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국가기관 등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구매목표비율(평가지표 상 만점 기준)을 상회하는 구매실적 및 계획수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0년 대비 2022년 구매계획의 목표비율 설정 수준 비교 시 국가기관 대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구매목표비율 만점 평점 수준이 평균 2배 이상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모든 유형의 수요기관에서 평균 계획 비율이 만점 수준을 상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기반형 특화 상품 및 용역(서비스) 공급이 많은 점,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이 적극적인 구매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에 대해 산하기관에게 일정비율(예: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 등) 이상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평가에서 반영하고 있음

  * 수요기관 내에서 부서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확대 노력 구체화

-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 간 구매우선 순위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구매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목표 수준 설정 시 평가 대상 유형별(국가 또는 지자체)로 목표수준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경우 해당 목표비율 이상 구매비율을 설정하여야만 나머지 다른 평가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종합평가 결과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지표의 구매목표 달성 만점비율이 타 우선구매 제도 평가지표에 비해 낮으므로 제한된 구매금액 내에서 평가결과를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모든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가 각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치적 측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구매결과에 대한 평가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실제 구매 의사결정은 평가 이외에 개별 우선구매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함

2.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급역량 강화 지원(기반조성)

- **선제적 구매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우선구매 제도에서 수요기관의 구매 및 계약담당자는 구매 의사결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품질 및 사후관리 곤란 등에 대한 우려임
  -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있고 상용화 수준이 높아 규격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품질 및 가격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매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이 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또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구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아짐
  - 그러나 수요기관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해당 수요기관에 특화되었거나 객관적인 품질 및 가격 평가기준이 없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구매의사결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이는 사후적인 납품검사 및 가격조사 등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수요기관이 원하는 적기, 적시, 적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선제적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를 통해 추천받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공급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공급역량 확대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상품,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와 함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급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인 강원도의 '강원곳간'과 경상북도의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는 다수의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판로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수요 매칭, 마케팅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개별 사회적기업 및 공급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복수의 물품과 서비스를 서로 다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통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활용 가능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판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거나 당사자 조직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 또는 주관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사례1: 강원곳간**

>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강원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물품을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몰
>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강원도내 수요기관(자)들에게 강원도 내 물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자인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판로채널 제공
> * 웹사이트: http://gwgoods.com, www.강원곳간.com

- **사례2: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

*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의 공공부문의 수요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보다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추진
* 웹사이트: http://se종합상사.kr
* 경상북도 내 사회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조합원사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고객관계관리와 상품 기획, 구매, 판매와 같은 소비자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 전반을 지원함
* 우수한 물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시장분석 및 판로개척, 수요기관 대상 판매촉진 활동, 경영지원/관리, 새로운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당사자 조직으로 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사인 사회적기업에게 통합적으로 지원함
*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으로서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이 자율적인 협회 등을 만들어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 수준을 단체표준 등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안내 가능함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과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품질 부실 및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구매기관이 선제적으로 일정한 생산기준과 품질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공급자들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사전 품질이 검증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직접생산확인증명이 가능한 물품과 용역 이외의 사회적기업체 특화된 제품과 용역의 공급이 많은 수요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 **사회적기업간 연계를 통한 공급가능 방법 채택**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판로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로 다른 물품을 연계하여 납품요구 가능함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단계 경쟁 대상 납품요구건으로 다수의 물품(세부품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납품 가능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는 납품요구 공고를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공급 가능한 물품의 수, 최대 공급 가능 물량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복수의 사회적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해당 납품요구에 대응 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토록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2단계 경쟁 제안 참여시 납품요구 품명수가 6개 이하인 경우는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 계약상대자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1. 4. 1.] [조달청고시 제2021-5호, 2021. 3. 3., 일부개정]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점) \times \frac{3(억원)}{6(억원)} + 60(점) \times \frac{2(억원)}{6(억원)} + 66(점) \times \frac{1(억원)}{6(억원)} = 68(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표준평가방식Ⅲ의 채택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 허용 시 사회적기업에게 공급

기회 확대 가능함

- **사회적기업 공급수요가 많은 소규모 용역개발 및 수요연계 활성화**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의 약 30%는 나라장터 등이 아닌 공공기관 자체의 소액구매(카드구매 등)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공급업체 수 기준 기타사업지원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소독서비스, 기타청소서비스, 기타교육서비스, 등이 약 810개(2020년 기준/중복포함)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 다수의 사회적기업 참여 가능한 분야임.
  - 그러나 대부분 20백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방식이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 또는 카드 등 직접구매 방식 등으로 이루어져 공급기회를 확인하는 어려움.
    또한 수요기관 측면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용역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일반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약하지 않는 경우 구매 가능한 사회적기업 공급서비스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측면에서 2022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조달청' 소규모 서비스 전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소규모(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용역에 대한 구매 수요를 등록하면 공급 가능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음.
  - 반대로 사회적기업들이 공급 가능한 다양한 소액의 소규모 서비스를 등록하면 그 중에서 각 수요기관별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공급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공급역량과 창업초기기업 우선구매를 고려하여 소액수의계약을 활용한 공급기회 보장**
  -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충족)과의 1인 견적수의 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에 있어 적격한 공급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초기기업(법정의무구매목표비율 설정 대상) 등으로서 공급기회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기업과 우선적 계약체결 활성화 검토

이음장터 소개 및 이용 유의사항 안내

▶ 수요자(공공기관)와 공급자(조달업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조달 플랫폼입니다.

▶ 수요자는 편리한 서비스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공급자는 계약체결 절차 없이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음장터 거래 주요내용

▣ **수요자(공공기관) : 편리한 서비스 상품 구매**

① **서비스 상품이 있는 경우 : (팔아요)** 상품등록업체에 견적 요청 → 주문 또는 계약체결

② **서비스 상품이 없는 경우 : (구해요)** 직접 필요한 상품을 등록 →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주문 또는 계약체결

* 수요자가 등록상품이 없는 경우 직접 필요한 상품을 등록(구해요) 하는 방식은 이음장터만의 장점입니다.

▣ **공급자(조달업체) : 계약체결 없이 상품 거래**

① **상품등록** : 나라장터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은 누구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상품 등록(팔아요)

② **상품거래** : 등록상품(팔아요) 및 수요자 구매상품(구해요)에 대한 견적 제출,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음장터 이용 유의사항

① **서비스 상품 거래는 부가세 포함 22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 55백만원까지 가능(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1인수의계약 참고)

② 이음장터 등록 및 거래 상품은 **조달청이 계약체결 하여 공급하는 상품이 아니며**, 상품가격은 업체 희망가격으로 **상품 이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1인 견적수의 계약에서 낙찰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제시 (2인 견적 전자수의계약 기준 준용 가능)되지 않으나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결정기준'에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수의시담 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이때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란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여 제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품질의 성능 및 서비스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가격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1인 견적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가격'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이 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기회가 많지 않았던 사회적기업과 계약체결을 통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및 지원효과 제고

* 소액수의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이음장터'와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가능

제3장

공공기관 구매 우수사례

3.1 (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3.2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3.3 (지방공기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4 (공기업) 한국남부발전

1

(준정부기관편) 한국농어촌공사

" *해당자료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참고자료 확인)의 교육자료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한국농어촌공사 미션(Mission)

우리는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농어업과 농어촌 현장 곳곳에서
농어업인의 행복과 농어촌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약칭: 농어촌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립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1조(목적)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기관연혁

1908년 |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에서 시작**

2000년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시대적 흐름과 공사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지고 있음

조직현황

본사 | **5 이사, 23 처·실**

지방 | **3 원, 9 지역본부(93 지사), 안전진단본부, 7 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주요사업

생산기반 | 용수관리 | 농지은행 | 기타

-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 조성 및 관리(다목적농촌용수개발, 대구획경지정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기계화경작로 등)
-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한 최첨단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대단위 농업개발, 새만금 종합개발, 농업특화단지 관리 등)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주요사업

생산기반 | 용수관리 | 농지은행 | 기타

- 과학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 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용수 공급,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농업용수 수질관리)
-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보호 (수리시설 개보수, 맞춤형 배수개선)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주요사업

생산기반 | 용수관리 | **농지은행** | 기타

- 청년창업농·2030세대 등 후계농업인 육성을 통해 고령화된 농업구조 개선 (맞춤형 농지지원, 공공임대용 농지지원)
- 경영위기 농가 및 고령농가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소개

주요사업

생산기반 | 용수관리 | 농지은행 | **기타**

- 지역개발 도농교류, 친환경 에너지사업, 스마트팜, 지하수·토양오염정화 등 환경 복원사업, 해외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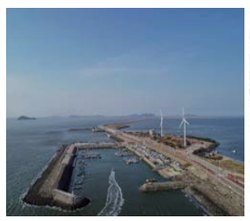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구분	총구매액(천원) (물품용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2021년	1,049,912,750	54,340,138	5.2	1,567,011	0.2
2020년	924,611,460	45,712,423	5.0	1,842,742	0.2
2019년	801,111,240	33,198,712	4.1	1,733,217	0.2
2018년	280,522,400	30,012,681	3.7	654,727	0.1
2017년	368,437,267	11,771,416	3.1	272,213	0.1
주요구매품목	-	관급자재(PE피복강관, 펌프, 수문권양기, 배전반 등)		용역(학술연구, 인쇄 등), 물품(계장제어장치, 조명기구 등)	
구매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한경쟁(중기간경쟁제품), 수의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구분	총구매액(천원) (물품용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2021년	1,049,912,750	54,340,138	5.2	1,567,011	0.2
2020년		45,712,423	5.0	1,842,742	0.2
2019년	801,111,24		.1	1,733,217	0.2
2018년	280,522,40		.7	654,727	0.1
2017년	368,437,267	11,771,416	3.1	272,213	0.1
주요구매품목	-	관급자재(PE피복강관, 펌프, 수문권양기, 배전반 등)		용역(학술연구, 인쇄 등), 물품(계장제어장치, 조명기구 등)	
구매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한경쟁(중기간경쟁제품), 수의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2021년 구매액 준정부기관 1위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구분	총구매액(천원)(물품용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금액(천원)	비율(%)	금액(천원)	비율(%)
2021년	1,049,912,750	54,340,138	5.2	1,567,011	0.2
2020년	924,611,460	45,712,423	5.0	1,842,742	0.2
2019년	801,111,240	33,198,712	4.1	1,733,217	0.2
2018년	280,522,400	30,012,681	3.7	654,727	0.1
2017년	368,437,267	11,771,416	3.1	272,213	0.1
주요구매품목	-	관급자재(PE피복강관, 펌프, 수문권양기, 배전반 등)		용역(학술연구, 인쇄 등), 물품(계장제어장치, 조명기구 등)	
구매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한경쟁(중기간경쟁제품), 수의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한국농어촌공사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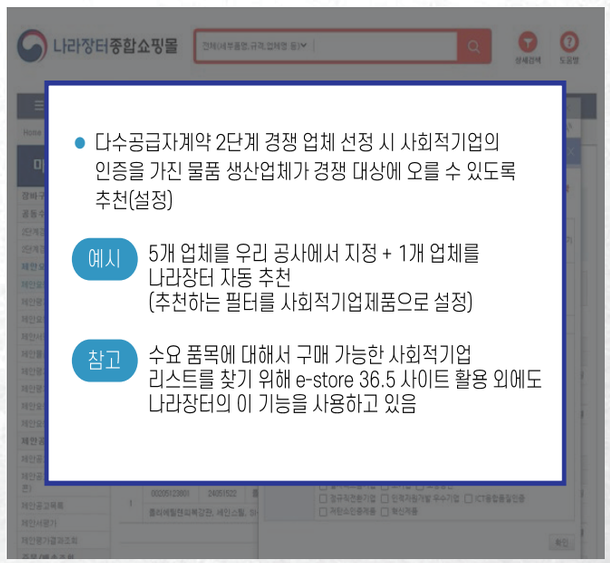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구매상담회 실시

추진목적(배경)
판로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확산을 위해 공사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

사업 추진내용
9개 지역본부에서 각 1회 실시,
구매상담회에 참석한 전체 58개사 중 사회적기업 17개사 참여

공사의 협력·위탁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실시

구매상담회 실시(대면)
전북지역본부

구매상담회 실시(비대면)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구매상담회 실시

성과 | 구매상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2021년 11,917백만원 구매

향후 계획 | 2022년 구매상담회 9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완료(~22.7월)

주요 수요품목 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물품 적극 구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내부평가제도 시행

추진내용 | 구매 목표(사회적기업 3%, 사회적협동조합 0.1%) 달성을 위해 각 본부/지사 등에 구매목표 부여 및 전 부서 연말 평가 실시

월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 점검 및 구매 독려

구매 우수사례에 대한 부서 사례전파

1. 관리계획 설정(기획조정실)
2. 우선구매 실행(사업부서)
3. 추진실적 점검(지역본부, 본사 계약부)
4. 평가 및 환류(본사 계약부, 기획조정실)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내부평가제도 시행

9	정부권장정책 구매관리	평가 대상	지역본부, 사업단, 지사(자율), 자체평가

구분	내용		
BSC 관점	고객(C)	배점	지역본부·사업단(5), 농어촌연구원(2)
측정주기	년/확정평가	지표유형	계량
전략목표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강화 〈과제〉 상생·협력기반 공유가치 창출		
지표정의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 평가항목 및 가중치

세부평가항목	내평 가중치
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18%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4%
③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10%
④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4%
⑤ 사회적기업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6%
⑥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6%
⑦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5%
⑧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5%
⑨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	5%
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10%
⑪ 녹색제품 우선구매	15%
⑫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실적	2%
합계	100%

※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해당 가중치에 맞게 비례하여 변환 후, 가감점 계산

□ 평가기준

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100점) ※본부=$P_1+P_2+P_3$ 사업단=P_1+P_2

1) 중소기업제품 구매성과(P_1 : 본부95점, 사업단100점)
- 본부 (P_1) = 60 + (X/96)×35
- 사업단 (P_1) = 60 + (X/96)×40

※ (X/96)의 최대값은 1
- X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총 공사·물품·용역 구매액)×100

※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구매액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P_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건수 감점(건당 △10점)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건수(건당 △10점)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우선구매 위반 건수(건당 △10점)

※ 지사에서 위반·미이행 시 소속 본부 감점

3)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촉진 실적(P_3=5점)
-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상담회 제품 박람회, 판매공간 지원 등에 대한 개최 실적 1회 이상 5점 단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시 최근 3년간('18~'20) 공사와 거래실적이 없었던 신규 업체(중소기업) 참여 의무

④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100점)
- 득점(P) = 60+(X/8)×40, 단 (X/8)의 최대값은 1
- X =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총 공사·물품용역·구매액)×10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구매 시 실적으로 인정됨

⑤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100점)
- 득점(P) = 60+(X/3)×40, 단 (X/3)의 최대값은 1
- X = 사회적기업 구매액 / 물품,용역 총 구매액 * 100

⑥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100점)
- 득점(P) = 60+(X/0.1)×40, 단 (X/0.1)의 최대값은 1
- X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물품,용역 총 구매액 * 100

⑦ 장애인제품 구매성과(100점)
- 득점(P) = 60+(X/1)×40, 단 (X/1)의 최대값은 1
- X = (장애인제품 구매액/총 공사·물품·용역 구매액)×100

⑧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100점)
- 득점(P) = 60+(X/1)×40, 단 (X/1)의 최대값은 1
- X =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총 물품·용역 구매액)×100

※ 꿈드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서 승인한 실적만 구매 실적으로 인정

⑨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100점)
- 득점(P) = 60+(X/0.6)×40, 단 (X/0.6)의 최대값은 1
- X =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액/총 물품·용역 구매액)×100

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100점=P_1+P_2)

1)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구매율(90점)
- 득점(P_1) = 60+(X/7)×30, 단 (X/7)의 최대값은 1
- X = (용사촌 생산품 구매액/용사촌 생산가능품목에 대한 총구매액)×100

2)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다품목 구매실적(P_2=10점)
- 1개 품목인 경우 2점 부여, 2개 품목인 경우 4점 부여 3개 품목인 경우 6점 부여, 4개 품목인 경우 8점 부여 5개 품목 이상인 경우 10점 부여

⑪ 녹색제품 우선구매(100점)
- 득점(P) = 60+(X/80)x40, 단 (X/80)의 최대값은 1
- X = (녹색제품 구매액/대상품목 전체 구매액)×100

※ 녹색구매정보시스템에서 승인한 실적만 구매 실적으로 인정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내부평가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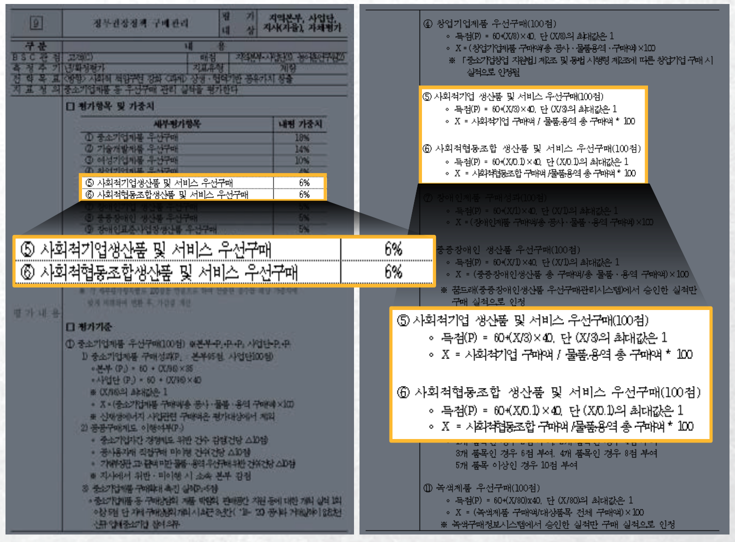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내부평가제도 시행

성과

월별 구매 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부진 부서 독려

공사 전체적인 우선구매 목표 달성
('21년 사회적기업 543억(5.2%), 사회적협동조합 16억(0.2%) 달성)

향후 계획

월별 구매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부 권장 우선구매비율 달성 노력

설계단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반영 등 참여 독려하여
판로지원 확산 노력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적격심사 시 신인도(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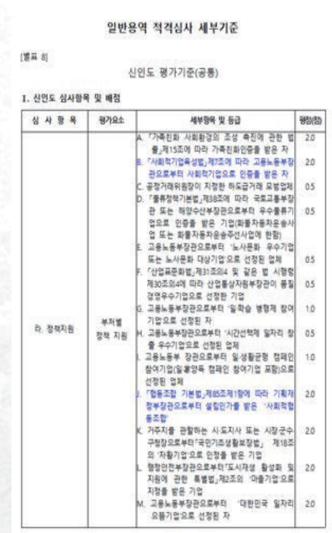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I.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2.0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0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0.5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1.0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1.0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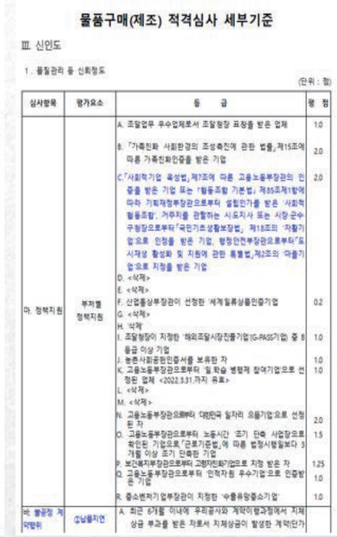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E. <삭제>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G. <삭제>	
		H. '삭제'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농촌사회공헌인증서를 보유한 자	1.0
		K.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2.5.31.까지 유효>	1.0
		L. <삭제>	
		M. <삭제>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Q.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적격심사 시 신인도(가점) 부여

추진목적 (배경)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지지 및
판로지원 도모

추진내용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을 가진 업체에게 2.0점씩 신인도 부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을 가진 업체에게 2.0점 신인도 부여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상생참여관 제도 시행(시범운영 기간)

추진목적 (배경)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구매 및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적 품목의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설계 이전에 상생참여관(계약담당부장)을 참여시켜 실적품목
안내 및 설계 반영 협의

상생참여관

- 각 부서의 계약담당부장을 의미함
-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구매와 상생을 위해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상생참여관'으로 명명함
- 특정제품 또는 특정규격의 설계 반영을 요구하거나
권고를 하는 것은 아님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상생참여관 제도 시행(시범운영 기간)

추진내용

사업부(서)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세부설계 시 (세부설계 완료 이전)에 해당지구 지급자재 구입에 관하여 계약부(서)로 협의 요청

계약부(서) 지급자재 유형, 규격을 기준으로 조달청 쇼핑몰 등에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혁신제품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자료 제공(안내)

사업부(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설계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구매전략/노하우

상생참여관 제도 시행(시범운영 기간)

시범시행기간 | 2022.7.1. ~ 2022.12.31

향후계획 |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현장부서 의견 수렴 후 제도 계속시행 여부(2023~) 등 결정

기대효과 |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가치 확산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사례

임직원 대상 금요장터 실시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요장터 실시

진행방식 공사 임직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생산물품 온라인 홍보(게시판) 및 주문 취합 → 공사로비 현장수령 및 택배발송

판매물품 김치, 두부, 콩, 들기름 등 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참여업체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43개사)

실시결과 총 5회 실시하여 15,426천원 물품 판매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사례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업사이클링 사회 공헌

개요
- 사회적기업(업체명 : 우시산)의 업사이클링 에코 키트 구매
- 임직원 38명 참여하여 에코인형 110개 제작
- 나주시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 110명에 인형 전달
- 아동센터(4개) 대상 환경 교육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올해 구매목표 및 추진계획

구매계획 총구매액 860,928백만원 중
사회적기업 구매 목표 28,307백만원
사회적협동조합 구매 목표 1,254백만원

향후계획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
월별 모니터링을 통한 전사적 구매 독려
부서별 구매 우수사례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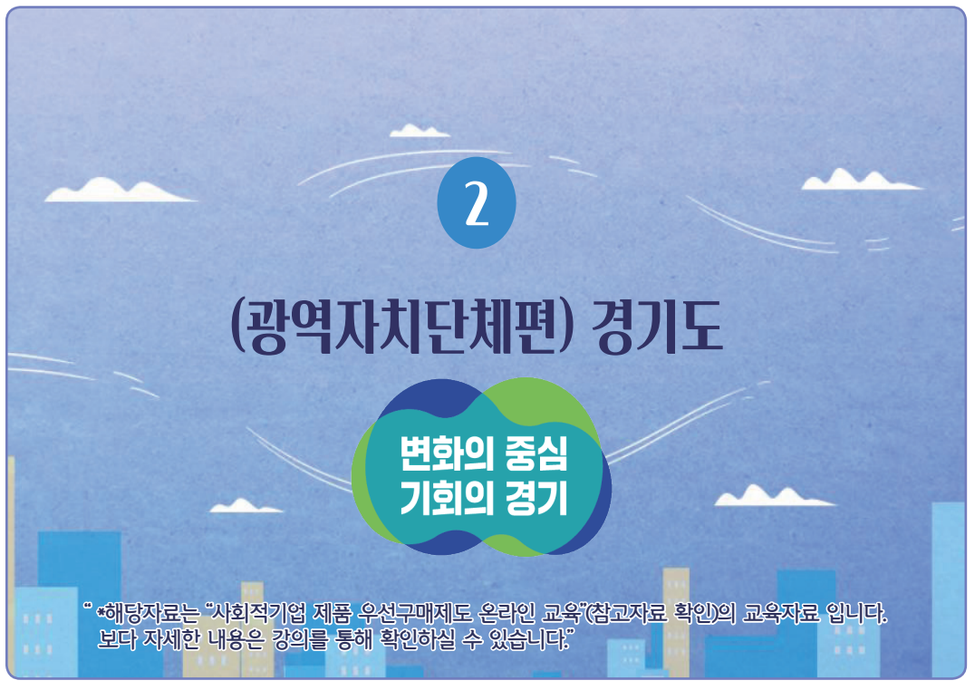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2021년 우선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구매액*	구매실적합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율
	금액	금액	구매율	금액	구매율	금액	구매율	
(합계)	4,224,282	366,060	8.7%	282,838	6.7%	83,222	2.0%	100%
경기도	352,152	23,743	6.7%	16,043	4.6%	7,700	2.2%	6.5%
시군	3,872,130	342,317	8.8%	266,795	6.9%	75,522	2.0%	93.5%

* 계약대금집행현황 기준(공사 제외)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기준(경기도 + 31개 시군)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
전국 지자체 전체 구매액 858,283백만원의 43% 차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전국 지자체 전체 구매액 657,739백만원의 43% 차지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
전국 지자체 전체 구매액 200,544백만원의 42% 차지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최근 3년간 우선구매 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구매율	금액	구매율	금액	구매율
(합계)	232,985	3.3%	316,792	7.9%	366,060	8.7%
사회적기업	198,270	2.8%	256,186	6.4%	282,838	6.7%
사회적협동조합	34,715	0.5%	60,607	1.5%	83,222	2.0%

83,807백만원⬆ (36%⬆)

49,268백만원⬆ (17%⬆)

* 연도별 총구매액 기준: (2019) 기타구매실적 / (2020, 2021) 계약대금집행현황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기준(경기도 + 31개 시군)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는 데이터 분석부터!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계	품의유형별							
		물품 (관급자재 포함)		일반		용역		공사 (수리/수선 포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1	359,552	51,956	14.5%	215,132	59.8%	84,519	23.5%	7,945	2.2%
2020	296,257	38,972	13.2%	169,688	57.3%	81,491	27.5%	6,106	2.1%
증감	63,295	12,984	33.3%	45,444	26.8%	3,028	3.7%	1,839	30.1%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직접구매 자료 기준(경기도 + 31개 시군), 보조금 포함

구매실적 분석결과 물품은 약 14%, 용역과 공사 등 서비스 분야는 약 25% 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종 수수료, 대행료,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되는 '일반' 지출유형이 약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는 데이터 분석부터!

품의유형 분석을 통해 보는 실적 데이터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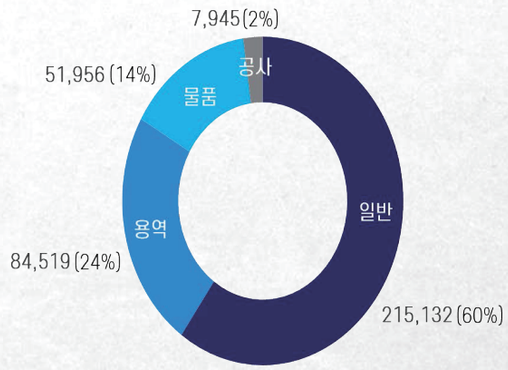

구매실적 데이터 분석
→ 지자체 실정에 맞는 우선구매 방안 및 정책 수립 가능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는 데이터 분석부터!

품의유형 분석을 통해 보는 실적 데이터의 시사점

물품 2년 연속 전체 구매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로 소액의 물품구매에 의한 구매실적 확대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

용역 ·공사 소액의 물품과는 달리 단일 건당 구매금액이 크고, 구매분야 확대를 위해 서비스 분야로의 외연 확장 필요

일반 구매실적의 약 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영역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 분석을 통해 실적확대 방안 모색 필요
※ 각종 위탁금, 대행료, 수수료, 홍보물 제작, 정부양곡 택배비 등이 주를 이룸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는 데이터 분석부터!

품의유형 '일반'을 주목하라!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에 한함)	인건비 (100)	물건비 (200)	경상이전 (300)	자본지출 (400)	융자·출자 (500)	예비비등 (800)	보조금 (제외 대상)
2021	금액	215,132	48	20,074	139,253	640	100	2	55,015
	비율	100%	0%	12.5%	87.0%	0.4%	0.1%	0%	(25.6%)
2020	금액	146,056	4	11,711	96,378	879	789	0	36,295
	비율	100%	0%	10.7%	87.8%	0.8%	0.7%	0%	(24.8%)

(100) 보수
(2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00) 출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전금 등
(400)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00) 민간융자금, 공사·공단 등 융자금, 출자금 등
(800) 일반예비비, 반환금 등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는 데이터 분석부터!

민간위탁 확대에 답이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구매실적	262,547	100%	296,257	100%	359,552	100%
보조금(제외대상)	36,403	13.9%	41,158	13.9%	55,161	15.3%
민간위탁금	93,458	35.6%	99,698	33.7%	181,413	50.5%

87,955백만원⬆ (194%⬆)

※ e-호조 직접구매 자료 기준(경기도+31개 시군), 보조금 포함

- '21년 구매실적 분석결과 민간위탁금은 50%를 차지할만큼 우선구매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구매율 상위 5개기관의 구매실적에서 민간위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4%로 압도적이었으며, 특히 구매율이 전국에서 1위인 S시의 경우 민간위탁금 비율이 88%에 달함 → 민간위탁금은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매년 금액 상승 특성 有
- 반면, 구매율 상위 5개기관의 실적에서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 보조금은 7% 밖에 되지 않음 → 구매실적 손실이 거의 없음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사회적경제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1)

구분	내용	관련법령(근거)
민간위탁/보조 확대	▪ 공모 시 가점 부여('19.3.13. 개정) ▪ 위탁 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조건 부여('19.3.13. 개정)	▪ 道 사회적경제육성 지원 조례 제17조(성남시 등)
공유재산 수의임대 확대	▪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 ※ 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충족 시 가능) ▪ 사용료(대부료) 50% 감경(道 공유재산 조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수의계약확대	▪ 금액 확대(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충족 시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 신인도 가점확대	▪ 신인도 가점 부여 - (물품) 1.0점 ※ 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일반용역) 2.0~2.5점('19.3.1. 개정) ※ 대상 :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가점 부여(2점)('20.8.1. 개정) ※ 최근 1년간 기초금액의 15% 구매실적 보유 시	▪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일반용역)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사회적경제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2)

00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문

8.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신규위탁 어린이집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여야 함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
- 시 지원내용: 국고보조시설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능보강비, 공공요금(사용금액의 80%) 등
- 보육료 지원내용: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수탁자부담내용: 시지원 보조금 이외 어린이집 수행경비 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금지

사업자 모집 공고 과정에서 운영 조건에 일반 사업자의 경우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여(미이행 시 위수탁 협약 해지)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수 증가 및 구매실적 확대 효과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공공구매 캠페인(선언식), 간담회를 통한 인식확산 및 목표공유

공공구매 활성화 캠페인 (선언식) 개최
('21. 6. 11.)

도·시·군 공공구매담당자 영상간담회
('22.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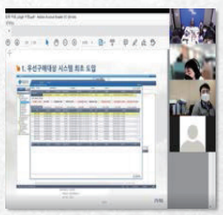

도·시·군 공공구매담당자 영상간담회
('22. 3. 29.)

공공구매 활성화 '가치:같이' 캠페인(선언식) 개최(道 사회적경제센터)
공공기관장 참석으로 우선구매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목표 선언,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 확산 등

경기도와 31개 시군, 25개 道 공공기관 참석,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영상간담회 개최**
전년도 구매실적 분석 및 금년도 목표 공유, 우선구매 제도 안내, 우수기관 사례발표, 각종 평가 계획 안내 등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기적·체계적 실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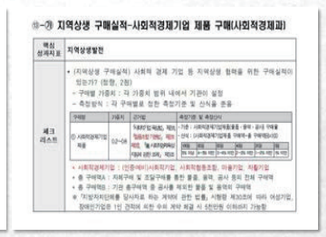

시군종합평가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

道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실적)

道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道 부서 성과관리(BSC) 평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장·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 (시기) 매년 1월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기적·체계적 실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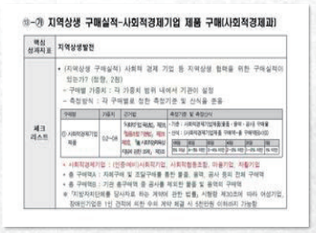

시군종합평가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

道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실적)

시군종합평가(정부합동평가의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 연계 지표 평가)
시군간 실적 경쟁을 통한 구매율 제고
※ (시기) 매년 10월~11월
※(평가대상) 도내 31개 시군
※(실적기간) 당해연도 1.1. ~ 9.30.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의 장 마련

'21년 온라인 공공구매 상담회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간 구매 상담회 개최
- 25개 공공기관, 116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22년) / 구매상담액 약 13억원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1:1 매칭방식(상담시간 15분). 우수사례 발표와 공연 및 식음료 시식, 체험 등 축제분위기 연출

➡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공공시장 진출의 기회 제공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의 장 마련

'22년 공공구매 상담회 ('22.6.17.)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우선구매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선구매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금 지급

경지도지사 표창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우선구매 우수사례 선정(시상금 지급) 및 표창, 우수사례 발간·배포

- 우선구매 기여자 연말 경기도지사 표창 전수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우선구매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선구매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금 지급

경지도지사 표창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우선구매 우수사례 선정(시상금 지급) 및 표창, 우수사례 발간·배포

- 道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우선구매 기여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2019년부터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금 지급
  ※ (시상건수) 104건
  ※(지급대상) 도, 시군,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여자
  ※(시상금액) 191백만원(전액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우선구매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선구매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금 지급

경지도지사 표창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우선구매 우수사례 선정(시상금 지급) 및 표창, 우수사례 발간·배포

- '19~20년 대상, 우수상 26건(장려상 제외)을 사업내용, 성과 중심으로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우수사례 공유

경기도 주요 우수사례 소개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시흥시

`20년 우수사례 대상

사업내용

- 전국 최초 주민주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마을관리기업 설립·육성
- 사회적경제기업에 6개 마을관리 공공사무 위탁*

  * (마을관리) 가로청소, 공공시설물 관리 등 / (주택관리) 택배보관, 집수리, 공구대여 / (복지증진) 공동육아, 돌봄 등

추진성과

- 지역(마을)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모델 정착(111명) → 우선구매 실적 확대
-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동체 지속과 자립 정착 지원, 사회문제 해결의 발판 마련

경기도 주요 우수사례 소개

우선구매대상 시스템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

`21년 우수사례 대상

사업내용

- '우선구매 시스템' 독자플랫폼 구축으로 공공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접속하지 않고도 공사 시스템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70만건 검색 가능

  ※ 조달청 오픈 API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등 동등이상 인증제품 자동검색 및 구매 제안

- 4개분야*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적경제 기업과 계약체결 의무화

  * 가구, 렌탈 / 실내건축 / 청소,경비 / 간판, 인쇄

추진성과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 대폭 향상

  ※ ('20) 1,845백만원 → ('21) 5,150백만원(180%↑)

경기도 향후 우선구매 추진 목표

용역 등 서비스 분야 구매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위탁 지속 확대

사회적경제 5종 기준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경기도 + 31개 시군 + 道 25개 공공기관 포함

3

(지방공기업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Gyeonggi Do Provincial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 *해당자료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참고자료 확인)의 교육자료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소개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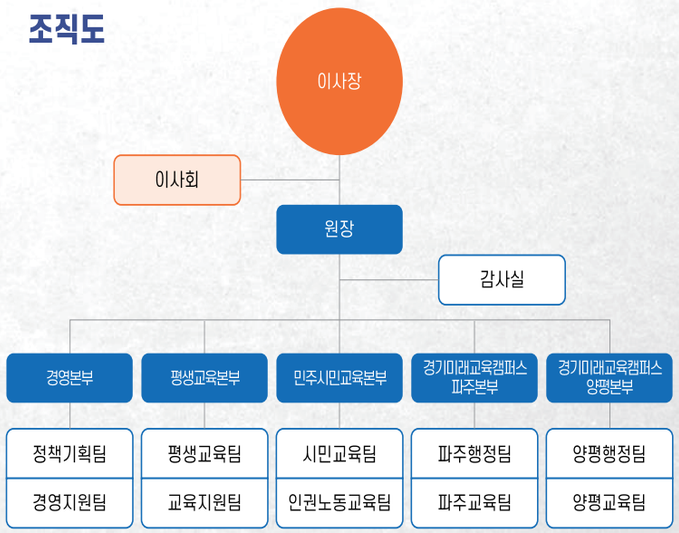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소개

평생학습 기본권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전문기관

설립근거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설립)

설 립 일 2011. 12. 28.

정 원 192명

조 직 5본부 1실 10팀

주사업소 수원(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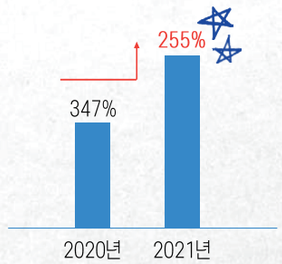

최근 3년 우선구매 실적 개선 현황

2019. 8. 우선구매 실적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2020년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로 의무구매 실적 개선(전년대비 347%)

2021년 구매영역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의무구매 실적 개선(전년대비 25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 방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전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 방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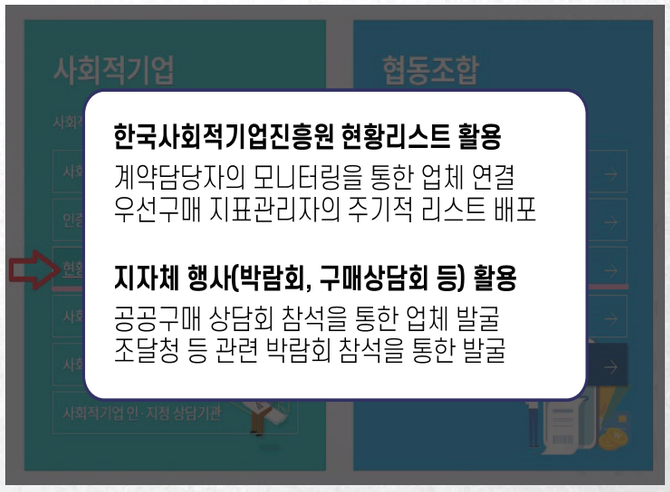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확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추구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단위 사업, 부서 등 결재선 독립으로 의무구매 반영 여부 감독이 어려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업체정보 부족으로 구매담당의 우선구매 의지 저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추진내용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와 사업본부장 협조**

전년도 실적 보고 및 당해 연도 계획 수립, 분기별 구매실적 보고

실적 보고서의 사업본부장 협조결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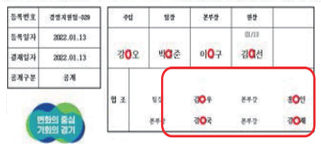

진흥원 2021년 의무구매 실적보고 및 2022년 추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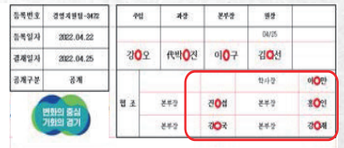

경영평가 의무구매 1분기 실적 보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추진내용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와 사업본부장 협조**

전년도 실적 보고 및 당해 연도 계획 수립, 분기별 구매실적 보고

전년도 실적 평가 및 당해 연도 계획 수립

Ⅲ 2021년 실적 현황

□ **주요성과**

○ '21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우수상 선정_(시상금 300만원)

* 道 사회적경제과-14148(2020. 12. 17.), 경영지원팀-9844(2020. 12. 18.)

- 선정분야 : 제도개선
- 선정내용 : 사회적경제 구매분야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실적 향상

○ '21년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및 육성 유공 도지사 표창 수여

* 道 특화기업지원과-12106(2021. 11. 04.), 경영지원팀-10070(2021. 11. 19.)

- 선정내용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비율 1% 달성기관 중 구매액 상위

Ⅴ 2022년 추진계획

□ **의무구매 강화로 사회적 약자보호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판로 확대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및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도정정책에 적극 동참	▶ 5천만원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용역의 입찰참여 어려움	▶ 지속적인 구매가능 품목 및 업체 발굴을 통한 실적 증대 도모 ▶ 분기별 실적 보고를 통한 부서별 실적 독려 ▶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사회적가치 구현

추진내용	▶ 지속적인 의무구매 강화 시행 - 의무구매 대상 여부 확인 후 발주, 지출 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우선구매) - 5천만원 이상 공개입찰 계약의 분리발주 검토 시행 ▶ 의무구매 관련 각종 사이트 정보 안내 - 게시판을 통한 녹색장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 등 관련 사이트링크주소 게시 ▶ 의무구매 유형별 품목 산정 및 구매처 안내 - 지류(복사용지, 화장지 등), 사무용품, 탕비용품 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추진내용 **각 사업장의 경쟁유발**

각 사업장의 구매실적을 비교하여 경쟁 유도

□ **평가항목별 구매실적(1월 ~ 3월)**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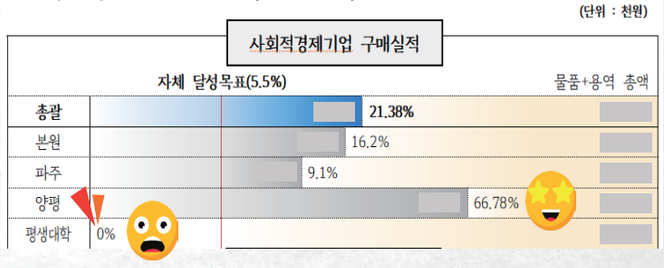

자체 달성목표 10% 상향 제시
총괄 실적과 단위 사업장의 실적을 한눈에 비교 가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추진내용 **계약 및 지출 모니터링**

모든 계약체결은 계약담당자의 의무구매 해당여부 검토 후 계약 진행

모든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문서에 의무구매 해당여부 표기 의무 시행

수의계약 사유	- 5천만원 이하의 용역에 해당하며, 해당 업체의 전문성 및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경영평가 사회적책임 항목 지표개선을 위하여 의무구매 대상 기업으로 진행하고자 함 **※ 계약 예정 업체는(대원시스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해당함**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 여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계약체결 요청의 의무구매
해당여부 표기 의무 부여로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추진내용 **계약 및 지출 모니터링**

모든 계약체결은 계약담당자의 의무구매 해당여부 검토 후 계약 진행

모든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문서에 의무구매 해당여부 표기 의무 시행

구분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녹색제품
해당여부 (O)	O	O	O		
미구입 사유 기재	-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기안문서 의무구매 해당여부 의무표기 및
미반영 시 사유 기재로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추진성과

우선구매 실적 개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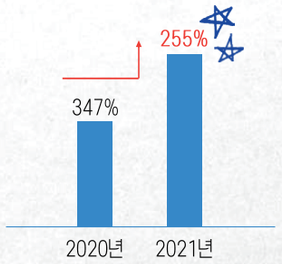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장려상 입상

2021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우수상 입상

2021년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및 육성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매영역을 확대한 사례

구매영역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으로 평생교육사업 교재 및 교육물품 제작

진로체험
(로봇공학자 체험)

세계시민
(SDGs의 이해)

창의교육
(햄스터로봇)

인성함양
(감정표현교육)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매영역을 확대한 사례

구매영역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으로 평생교육사업 교재 및 교육물품 제작

~'20년도까지 사회적기업 주요 구매영역은 소모품, 인쇄물, 단순용역, 구매대행으로 제한적임

'21년 구매영역 확대를 위한 교재, 교육물품 제작, 사업수행 영역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 추진

특히 평생교육 사업수행 영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는 새로운 구매영역을 개척한 사례로 볼 수 있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올해 구매목표 및 추진계획

추진계획

목표실적 10% 상향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계약주기 맞춤형 리스트 제공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올해 구매목표 및 추진계획

주요전략

매년 반복되는 계약 리스트 검토

↳ 계약 시기 도출

↳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리스트 제공

↳ 계약 의뢰서 접수 및 검토

↳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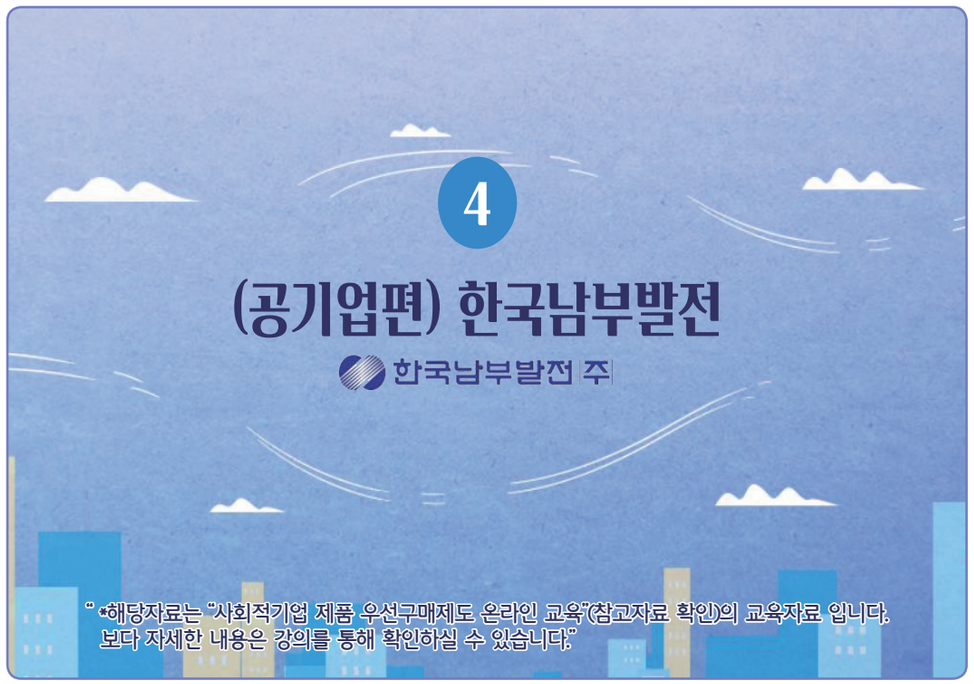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회사개요

한국남부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01.4)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회사개요

회사 설립 목적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

발전, 송전, 배전, 판매분야 중 '발전부문'부터 경쟁구도 개편

한전에서 5개 화력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할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주요연혁

- 2001 한국남부발전㈜ 설립
  하동석탄화력 5,6호기 준공
- 2009 영월LNG복합 착공
  하동석탄화력 7, 8호기 준공
- 2011 시장형 공기업 지정
  삼척화력 건설 착공
- 2014 안동LNG복합 준공
  본사 부산 이전
- 2017 삼척석탄화력 준공
  칠레 켈라 가스복합 준공
- 2019 남제주LNG복합 착공
  미국 나일스 가스 복합 착공
- 2020 솔라시도 태양광상업운전 개시
  요르단 대한풍력 2호기 설치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주요연혁

2011년부터 **"시장형 공기업"** 지정,
2014년 **"부산 본사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 상생에 힘써
5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동반성장 우수성과 달성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국내 설비현황

하동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8개 발전소, 총 11,476MW 운영 중"으로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134,461MW)의 **"8.5% 점유"**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국내 설비현황

*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 : 건설 중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국내 설비현황

총 설비용량 : 11,476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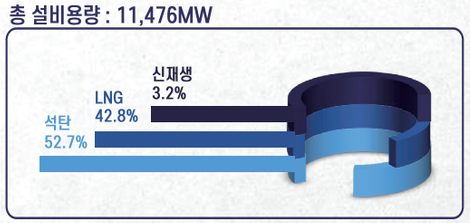

신재생 설비용량 : 820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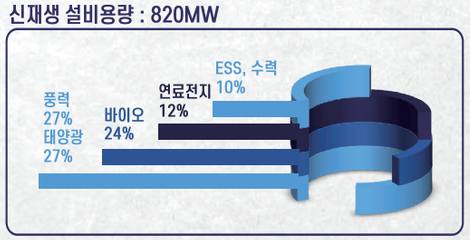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해외사업 현황

국내 최초 "美 LNG 복합발전사업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북미 전력시장 진출 확대", 해외 거점지역를
통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해외사업 현황

한국남부발전 기관현황 및 개요

조직현황

발전사 최초 **"ESG 실천 전담조직"**(ESG혁신처),
"수소사업 전담조직"(수소융합처) 신설('21. 6)
"본사(3본부, 14처·실) / 사업소(8개 본부)"로 구성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수의계약 등 활용 다양한 품목 구매

구 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주요구매품목	① (물품) CCTV 보강자재, 조명·통신설비, 방음벽 등 ② (용역) ICT 분야 위탁 용역 ③ (공사) 케이블 공사, 판넬 도장공사 등	① (물품) LED전광판, 소화기, 등 ② (용역) 차량 유지관리, 인쇄 등
구매방법	①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② 간접구매 적극 활용, ③조달청 나라장터, ④ MRO몰 등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정부 권장구매 비율 상향 달성

2017년 ~ 2021년 5개년 우선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구매액 (물품+용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2021년	233,076	7,168	3.08	237	0.10
2020년	259,922	10,826	4.17	926	0.36
2019년	224,127	7,657	3.42	809	0.36
2018년	225,055	7,955	3.53	407	0.18
2017년	197,222	7,964	4.04	243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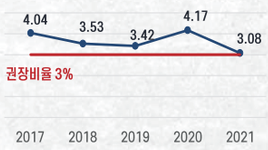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정부 권장구매 비율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구현-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지표의 목표치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공공구매社 전환을 통한 실적 창출

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경상 정비 등)의
공공구매社 전환을 통한 우선구매 실적 창출

"ICT업무지원분야 위탁용역"의 공공구매 전환
(수의계약 활용)

연간 약 20억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 창출

단순 일회성 구매가 아닌,
지속가능 용역계약을 통해 실질적 동반성장 효과 창출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방법

1 내부직원 소통 COP(Community of Practice) 운영

전직원 참여가능한 업무지식 공유 COP

중소기업 홍보 게시판을 통해 각 기업별 홍보 카달로그, 제품 소개 등을 확인 가능

각 기업 홍보자료, 인증제품 자료 본사 구매 담당자 1인에게만 한정 (구매상담회, E-mail 등을 통한 정보 획득)	개선 ➡	수요품목 발생 즉시 각 기업 품목 정보 확인 가능 (COP 접속)

공공기관 판로 개척 어려움 해소

구매상담회의 실질적 효과 창출

오픈 플랫폼을 통한 신규 품목 정보 적기 탐색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방법

2 온라인 홍보관 9988 운영

자유로운 기업 "소개의 장" 마련

협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홍보 및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관 구축

기업들은 공공기관 판로 개척의 어려움 호소	장애요인 ➡ 해소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의 홍보 플랫폼
구매상담회 참여 지역적 한계 구매상담회가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음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의 연락 및 대면 어려움		온라인 등록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홍보 및 우수제품 소개 카테고리 세분화를 통해 품목별, 기업별 정보획득 용이 내부 사이트로 연동되어 전직원이 확인가능토록 개선 추진 ('22)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방법

1 내부직원 소통 COP(Community of Practice) 운영

전직원 참여가능한 업무지식 공유 C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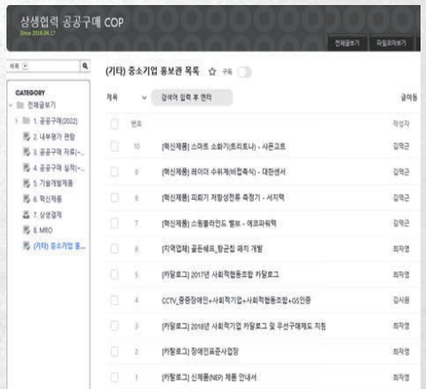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발굴방법

2 온라인 홍보관 9988 운영

자유로운 기업 "소개의 장" 마련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전시회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회 진행

추진목적 (배경)
- 사회적약자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회사 및 우수제품 소개 기회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기관과의 공동주최를 통한 기업 다양성 등 협업 시너지 창출

사업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일반소모품, 홍보용품 등 사회적기업)
- 한국남부발전 본사/본부 담당자, BIFC 이전 공공기관 담당자 등 공공기관 참여범위 확대

추진성과
- 총 45개사 사회적기업, 부산이전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300명 참여
- 컨설팅 29회, 구매상담 25회 시행으로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기여

향후 계획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22년 하반기)
- 자사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물품 적극 구매

01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워크숍 시행 매년 전사 구매 담당자 워크숍 시행, 연간 추진 계획 및 구매 애로사항 공유

추진목적 (배경)
- 인사이동 등 잦은 구매담당자 변경으로 관련 사규, 구매 물품, 구매 방법 등에 대한 업무 노하우 부족
- 연간 구매 추진계획 공유 및 구매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수렴으로 적극적 실적 발굴 환경 조성

사업 추진내용
- 회사 구매 목표, 수의계약 법령, 간접구매 방법 등 공유
- 본사 및 8개 본부 구매담당자 참석, 각 본부 우수사례 BP 발표 및 고충 수렴

추진성과
- 담당자 총 28명 참석, '지역 특성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BP 7개 발굴
- 계약진행시 애로사항 반영하여 내부 사규 개정(제한경쟁) 추진 중

향후 계획
- 전사 공공구매 담당자 워크숍 시행 ('23.3)
- 구매 상담회와 연계 실시하여 실구매 담당자와 기업간의 대면창구 마련

02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전시회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회 진행

01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워크숍 시행 매년 전사 구매 담당자 워크숍 시행, 연간 추진 계획 및 구매 애로사항 공유

02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내부평가 제도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사업소 목표 배분, 공동노력을 통한 우수 성과 창출

추진목적 (배경)

- 회사 목표 적극 달성을 위한 全 조직 목표 의무 배정 및 공동 노력 동참
- 우수사례 발굴 조직(간접구매 노력, 경상사업 공공구매 전환 등) 가점 부여로 장기적 실적 창출

사업 추진내용

B. 공공구매 실적 (3점)

○ 득점산식 : 배점 × 적중률(%)

○ 배점

가.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율 (1.5점)

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율 (1.5점)

○ 적 중 률

적중률(%)	100	99.5	99	98.5	98	97
목표대비 달성률(%)	100%이상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 전실별 달성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사회적기업 목표금액	장애인기업 목표금액	구 분	사회적기업 목표금액	장애인기업 목표금액
안전관리처			친환개발처		
ESG혁신처			기후환경품질처		
기획처			그린뉴딜사업처		
관리처			수소융합처		
조달협력처			해외사업처		
디지털정보보안처			투자관리처		
발전처			합 계		

다. 가점

○ 혁신시제품 (500만원/건 이상 인정) 가점 (0.005점/건, 최대 0.015점)

* 혁신제품 :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② 민간시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장조달청장에 의해 지정된 제품

○ 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구매, 용역, 공사 5억 이상)의 공공구매로 전환 (0.015점/건, 최대 0.015점)

B. 사회적약자기업 우선구매 실적 (1+2+3+4+5+6+7+8+가점, 2.2점)

○ 득점산식 : 배점 × 적중률(%)

○ 배 점

1.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0.4점)
2.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성과 (0.3점)
3.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성과 (0.3점)
4.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성과 (0.3점)
5.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0.4점)
6. 자활용사존 물품 우선구매 (0.3점)

○ 적 중 률

적중률(%)	100	99.5	99	98.5	98	97
목표대비 달성률(%)	100%이상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 사업소별 달성목표 (단위:억원)

사업소	하동	삼척	신안전	부산	남해우	영월	안동	신새동	합계
사회적기업 목표금액									
사회적협동조합 목표금액									
중증장애인기업 목표금액									
장애인표준사업장 목표금액									
장애인기업 목표금액									
자활용사존 물품 목표금액									

7. 자활용사존 물품 다품목 구매 노력도 (0.2점)

○ 득점산식 : 배점 × 적중률(%)

* 품목수 = 용사존 생산품 구매 품목 수 (5개 품목 이상 구매시 만점)

<품목수별 적중률>

품목수	5개품목 이상	4개품목	3개품목	2개품목	1개품목 이하
적중률(%)	100	99.5	99	98	97

03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구매 사전검토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여부 사전 검토제 도입으로 약자기업 우선구매 적극 검토

추진목적 (배경)

-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권고 제도개선 내용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 발주부서 구매추진 시 사전 검토를 통해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의 실효성 제고

사업 추진내용

- 정부권장정책 구매 검토서 도입 적용 (적용대상 : 모든 구매, 용역, 공사 및 소액수의계약)

제23조(구매요청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매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여부 사전 검토 (신설 2021.11.15)

소액수의계약 업무처리기준

제정 2020.10.29
개정 2021.09.09

사. 구매부서는 계약체결 시 장애인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09)

정부권장정책 이행 구매검토서

계 약 명 :

정부권장정책 이행 검토

번호	구 분	구매가능 유무	구매불능 사유
1	장애인기업 생산품		
2	중증장애인 생산품		
3	사회적기업 제품		
4	여성기업 제품		

☞ 특정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이 없어 구매를 포함 경우 타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으로 구매 가능하며, 적정 구매를 위하여 계약부서에서 특정 정부권장정책 물품 구매 요청 시 수용해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5) 및 계약규정 제23조②항5호에 의거함

21 . . .

담당자 직급 : 성명 (인)

확인자 직급 : 성명 (인)

04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내부평가 제도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사업소 목표 배분, 공동노력을 통한 우수 성과 창출

추진성과

- 전 조직 공공구매에 대한 이해도 상승 및 중요성 인식
- 매월 전사 담당자 화상회의를 통해 부진지표 중점관리 등, 2021년 정부우선구매 목표 초과 달성

향후 계획

- 2022년 정부평가 지표 변경사항에 맞춰 내부평가 지표 세분화 및 기준 강화
- 지속적 실적 모니터링 및 추적 관리를 통해 정부목표 달성 노력

03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구매 사전검토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여부 사전 검토제 도입으로 약자기업 우선구매 적극 검토

추진성과

- 2021년 사회적 약자기업 정부우선구매 목표 초과 달성
- 신규 수요 물품에 대한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 기회 확대

향후 계획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 증진을 위한 내부 사규 검토 및 개정 지속 추진

04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내부사규 제정 사회적기업 등 제한경쟁 가능 항목 제정으로 내부 실적 발굴 적극 독려(추진 중)

추진목적 (배경)

- (5천만원 이하) 단독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전자공개수의 등을 통해 일반기업과 계약 체결 多
- 특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추진시 공정성·민원 우려로 업무추진 위축

사업 추진내용

- (5천만원 이하)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내부사규 제도화

As-Is	To-Be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제한경쟁 관련규정 無 국가계약법의 소극적 해석으로 제한경쟁 비활성화	계약규정 개정을 통한 명시적 근거 마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각각 제한경쟁 가능

05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구매전략/노하우

내부사규 제정 사회적기업 등 제한경쟁 가능 항목 제정으로 내부 실적 발굴 적극 독려(추진 중)

기대 효과

-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부담 경감 → 적극적 규제혁신을 통한 우선구매 토대 마련
- 실질적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기업성장 지원 (2022년도 기준 60억원 이상 예상)
  * 제도 개선 이후 해당 구간 계약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기업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05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

1 민관공 협업형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지원 업무협약 추진

민·관·공 협업 기반, 종합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산업활성화를 위한 발굴, 판로, 육성, 복지 4단계 종합지원체계 구축

① 협약 체결

공공기관	정부기관 및 지방단체		민간기업
한국남부발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지원사업 추진 및 직접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Pool 및 성과관리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현장혁신 컨설팅

② 협업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	판로지원	직접구매	복지지원
제조현장 생산성 향상 컨설팅(최초)	공공시장 진입 및 신판로 개척 (구매상담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물품 직접 구매 활성화로 기업매출 향상	동반성장몰 활용 물품/복지 지원

* 온라인 플랫폼 : MRO몰(남부발전 자체 소모품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아마존, 알리바바 등)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

1 민관공 협업형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지원 업무협약 추진

민·관·공 협업 기반, 종합지원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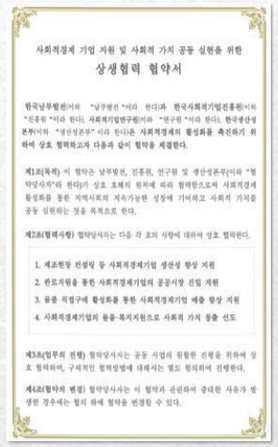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라 한다)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사회적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남부발전, 진흥원, 연구원 및 생산성본부(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력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동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제조현장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 판로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3. 물품 직접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향상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복지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제3조(업무의 진행) 협약당사자는 공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협력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하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

2 발전사 최초, 산업혁신운동 추진을 통한 사회경제적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유관기관 협업 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 사회경제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투자·지원 요구

기업 물품 판매 확대 관점 → 기업의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체질 개선에 관심

추진체계

1단계 (기업공모)	2단계 (현장진단)	3단계 (과제발굴)	4단계 (모니터링)
전국사회적기업 대상, 효과성 등 8개 항목 평가 (16社 선정)	전문컨설턴트 현장 진단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3대 분야 45개 과제 발굴, 기업별 2~3개 과제 수행	모니터링 및 환류, 설문조사 등 성과분석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

2 발전사 최초, 산업혁신운동 추진을 통한 사회경제적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유관기관 협업 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

16개사 대상, 3대 개선 분야 추진으로
"12억원 개선 효과 창출",
"16개사 매출 평균 전년대비 3.3억원 증가"

1. 생산성, 품질 향상 분야
   용접공접 표준화로 불량률 감소 등 25개 과제로 8.7억원 창출
2. 안전, 환경 개선 분야
   창고관리체계 개선 등 14개 과제로 1.1억원 창출
3. 원가절감, 납기준수 분야
   생산프로세스 개선 리드타임 단축 등 6개 과제로 1.9억원 창출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올해 구매 목표 및 추진계획

정부 권장 구매 비율 상향 달성
(정부 권장 구매비율 대비 10% 상향)

신규 기업 구매 실적 발굴로
다양한 기업 지원 및 지속적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남부발전 우선구매 우수사례 올해 구매 목표 및 추진계획

추진실적

-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으로 중기부 대한민국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 최우수기관 선정(11월, 대통령상)
- 2021년 기재부 주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7월)

구매목표

- 사회적기업 : 권장구매율(3%) 대비 10% 상향된 3.3% 설정
- 사회적협동조합 : 권장구매율(0.1%) 대비 10% 상향된 0.11% 설정

사회적기업 구매목표	사회적협동조합 구매목표
총구매액(물품+용역)의 3.3%	총구매액(물품+용역)의 0.1%

한국남부발전 | 우선구매 우수사례 | 올해 구매 목표 및 추진계획

향후계획

- 기존 거래 실적이 없던 신규 사회적기업 등 발굴 노력
  (현재 4개 사회적기업 실적 신규 발굴 完)
- 지속적 실적 모니터링 및 보완방안 강구를 통한 정부권장구매 비율 준수
- 사회경제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BP 사례 발굴(경진대회 등) 적극 추진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참고자료

참고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참고 2 e-store 36.5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
참고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참고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참고 5 자주하는 질문 [FAQ]

참고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 **(추진목적)**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이해도 향상을 통한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교육 개요**

- **일 정:** '22. 9. 14.(수) ~, 상시 수강 신청 가능
- **교육방법:** 진흥원 교육플랫폼(https://coopedu.step.or.kr)을 통한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 후 수강
  * PC 및 모바일에서 수강 가능
- **교육비용:** 무료
- **교육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 등 전체 임직원
- **교육과정:** 1개 과정

교 육 명	과 정 명	시 간
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교육	1.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기업	2시간
	2. 우선구매제도란?	
	3.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방법	
	5. 공공기관 구매 우수사례	

- **수료조건**: 학습 진도율 80% 이상
- **교육혜택**: 1. 수료자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2. 교육시간(각 공공기관의 자체 상시학습시간) 인정 (관련하여 진흥원 문의 필요)

참고 2 e-store 36.5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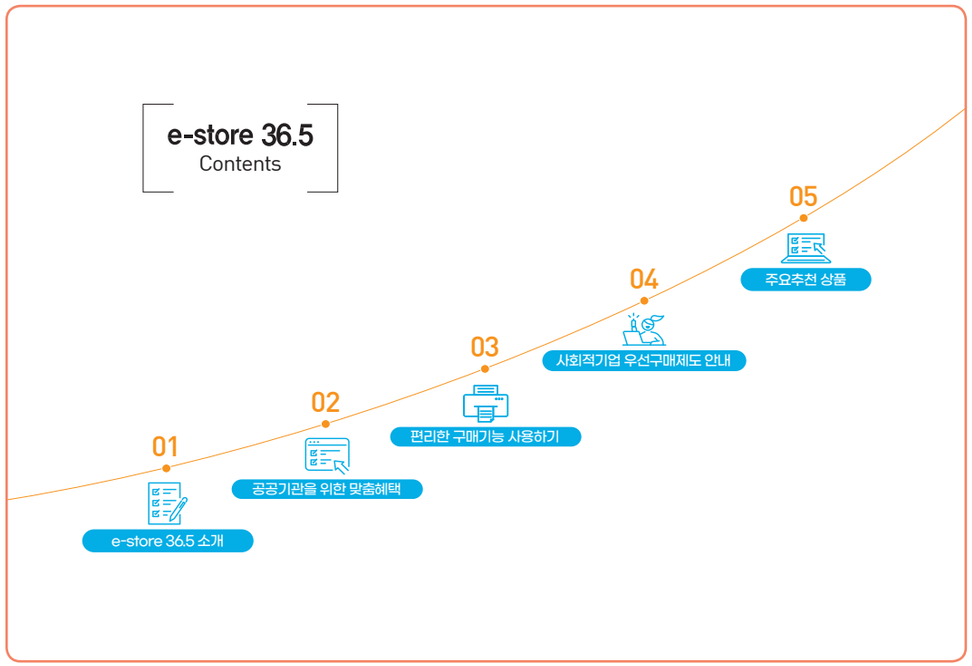

e-store 36.5 소개

"e-store 36.5(www.sepp.or.kr)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ore 36.5 주요기능

01 사회적경제 상품몰

e-store 36.5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상품몰로서 전국에서 생산 · 유통되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2천(1백)여개 입점, 3만여개 상품 등록·판매
- 공공기관에서 상품등록 요청 가능(용역 · 서비스 포함)

0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e-store 36.5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직접구매 실적으로 인정도 되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자동연계)에서 e-store 36.5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상품 등록

구매내역 확인

우선구매 실적입력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 혜택

"우선구매 지원을 위한, e-store 36.5에서만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세요"

이제 e-store 36.5에서 구매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직접구매 실적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는
직접구매 실적이 됩니다

☑ **상품 확인하고, 견적·상품 주문하고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 받아 무통장입금만 하면 끝!**

☑ **위수탁세금계산서 처리 건은 증빙이 불필요하며 직접구매 실적으로 자동 집계**
※ 공공기관 회원의 소속기관 정보에 따라 구매실적 집계됨

☑ **위수탁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사회적기업 정보로 확인 구매상품이 우선구매 중복 인증 상품에 해당할 경우, 복수 구매실적으로 인정 가능**
※ 여성기업.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e-store 36.5 에서 위수탁세금계산서 처리하기

❶ **견적요청**
상품을 선택 → **[우선구매 견적요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 요청내용 입력 후 → [요청하기] 클릭

❷ **구매**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상세보기] 클릭 →
[바로결제] 클릭 → **결제방법 : 무통장 선택 후** → [결제하기] 클릭

❸ **위수탁세금계산서 요청**
마이페이지 [세금계산서요청] 클릭 → 주문 선택 후 →
[세금계산서신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 **위수탁계산서 발행 확인 및 내용입력 후** → [세금계산서 신청하기] 클릭

편의기능 활용 Tip!!

"견적요청부터 구매, 거래명세서 출력까지!
One-stop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분들,
이렇게 편하게 구매하세요!

법인카드 결제, 무통장입금은 당연히 가능!!

견적결제
대량구매 등 가격협의가 필요한 경우 가격협의 후
견적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후불결제
바로결제가 어려우신가요?
공공기관 회원은 **후불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수령 및 검수 이후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구매실적 연계

e-store 36.5 에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시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에 모두 반영됩니다.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제공

전국 사회적경제기업과 상품을 만나볼 수 있고,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 제품을 찾으시나요?
e-store 36.5 의 **인증상품관**에서 다양한 우선구매 상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편의기능 활용 Tip!!

"견적요청부터 구매, 거래명세서 출력까지!
One-stop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매서류 온라인 출력서비스

우선구매 견적서

❶ 상품을 선택 → **[우선구매 견적요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❷ 견적요청관련 내용 기입한 후 → **[요청하기]** 클릭
❸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상세보기]** 클릭
❹ 견적서 출력을 원하는 경우 → **[견적서출력]** 클릭

구매증빙 서류

❶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클릭 → **[주문상세]** 클릭
❷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업인증서 거래명세서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등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❸ 출력을 원하는 경우 → 클릭

상품등록 요청서비스

구매희망 상품 등록

- e-store 36.5 에서 판매되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소싱하여 맞춤상품 안내 및 구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페이지에서 **[공공기관 희망상품]** 클릭 후 **[상품추천등록]** 입력
- **[공공기관 희망상품]** 기능은 공공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주문서비스

❶ 견적요청
상품을 선택 → **[우선구매 견적요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 견적요청사항 입력한 후 → **[요청하기]** 클릭

❷ 견적확인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견적서확인]** 클릭

❸ 구매하기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바로결제]** 클릭

견적요청 목록

물품 수령 후, 후불결제서비스

❶ 구매하기
상품을 선택 → **[바로구매]** 클릭 → **결제방법 : 무통장 선택 후 [결제하기]**

❷ 물품수령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클릭 → **[구매확정]** 클릭

❸ 후불결제
마이페이지 주문번호 아래 **[결제]** 클릭 → 결제방법 선택 후 → **[결제하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정의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❶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❷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범위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치소비 세트

사진출처: 빅이슈코리아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사회적기업

읽는 순간, 바뀌는 세상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빅이슈 정기구독 12개월

가 격 168,000원
지 역 서울(은평구)
가치소비 주거취약계층에게 일거리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지원

위캔센터
사회적기업

사람을 생각하는 정직한 쿠키
순수 우리밀로 만든
우리밀쿠키 3종선물세트

가 격 12,500원
지 역 경기(고양시)
가치소비 발달장애인과 함께 쿠키를 만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주) 공기핸디크래프트
사회적기업

즐거운 시간 더해지는 자연의 이야기
공정무역 티크젓가락 &받침 선물 세트

가 격 30,000원
지 역 서울(마포구)
가치소비 저개발국 소규모 수공예 생산자 자립 지원

화이통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월 할매들의 꿈과 바램을 담아
만들어진 꽃차
할매화첩 건강꽃차 프리미엄

가 격 32,000원
지 역 강원(영월)
가치소비 지역 어르신이 가꾼 꽃을 꽃차원료로 이용하고 취약계층 고용 창출

가치소비 세트

사진출처: 정선아라리한과농원영농조합법인

㈜어스맨
사회적기업

인공첨가물 ZERO
공정무역 지구마을 건과일 4종 선물세트

가 격 35,000원
지 역 서울(은평구)
가치소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무역을 통해 지구촌 곳곳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시킵니다.

(주)리디브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믿을 수 있는 100% 국내산 천연벌꿀
봉화정 꿀스틱 천연벌꿀 선물세트

가 격 33,000원
지 역 서울(성동구)
가치소비 국내 양봉로컬 양봉농가와 함께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

정선아라리한과농원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정성으로 키운 약도라지
강옥연 도라지정과

가 격 48,000원
지 역 강원(정선군)
가치소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농업회사법인 새뜸주식회사
예비사회적기업

깐깐한 청년농부의 엄선된 복숭아
SINCE 1908 조치원 복숭아

가 격 21,000원
지 역 세종(조치원읍)
가치소비 대형 마트에 납품이 어려운 상품을 가공 판매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친환경 추천 상품

사진출처: (주)세상에 없는 세상

주식회사 퀸비스토어
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포장
친환경 천연 여행 트래블 KIT

가 격 13,000원
지 역 강원(원주시)
가치소비 환경에 무해하고 땅에게도 이로운 대안 제품

(주)헬씨티슈
사회적기업

지구와 나를 보호하는 'BOHO'
자연본색 먼지없는 친환경
대나무 미용티슈 200매

가 격 21,600원
지 역 서울(금천구)
가치소비 친환경 소재인 초본류의 대나무로 친환경 녹색 상품을 제조·유통

(주)세상에 없는 세상
사회적기업

오직 우리땅 농산물로 만든
친환경 비건 설거지비누
자상한농부 설거지 비누 세트

가 격 22,000원
지 역 서울(은평구)
가치소비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책임 이행

주식회사 비즈링크
예비사회적기업

소중한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퓨어 오가닉코튼 타올/수건/타월

가 격 4,500원
지 역 대전(대덕구)
가치소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사무실 소모품 추천 상품

(주)신성피엔텍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함께쓰면 즐거워지는 환경부 인증 친환경
신성카피 복사용지 80g A4

가 격 26,000원
지 역 인천(계양구)
가치소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아름다운커피
사회적기업

2분이면 나도 바리스타!
킬리만자로의 선물 콜드브루 16개입

가 격 14,800원
지 역 서울(종로구)
가치소비 자개발국 가난한 생상자들의 빈곤과 무역의 문제해결

(주)제일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약계층 및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6.5oz 종이컵(1,000EA)

가 격 10,600원
지 역 경북(칠곡)
가치소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하여 취약계층 스스로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

주식회사 디올연구소
사회적기업

시력약자(저시력,노안,색맹,색약)까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배너

가 격 15,000원
지 역 서울(성북구)
가치소비 사회적 문제 발굴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담당기관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031-697-7835 070-7893-9611

참고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Ⅰ〉(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 Ⅱ〉(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 Ⅲ〉(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Ⅲ〉(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참고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단,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서 동일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 및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제안품목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기준 제6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및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기준 제9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text{점}) \times \frac{3(\text{억원})}{6(\text{억원})} + 60(\text{점}) \times \frac{2(\text{억원})}{6(\text{억원})} + 66(\text{점}) \times \frac{1(\text{억원})}{6(\text{억원})} = 68(\text{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구성원 수 /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제10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이행 관리 등에 대하여도 각 구성원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새로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참고 5 자주하는 질문(FAQ)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

Q 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임
- 최상위 기관이 소속기관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제출(교육청의 경우 광역단위가 소속 기초단위 실적 합산)
- 단, 해당기관의 소속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실적에 합산하지 말고 소속기관 개별 실적으로 제출(지방공기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포함하지 않음)

Q 2.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직접 계약하여 구매하는 직접구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과 계약체결 후 계약기업(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간접구매)도 실적으로 인정
- 단, 간접구매의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확인 및 보관해야 함

Q 3.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대행 기관을 통하는 경우 구매실적 인정 여부는?

- 구매대행 기관(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판매시설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액만 인정(일반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구매실적에서 제외)
-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등)를 확인·보관 필요

Q 4. 사회적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 비율 또는 구매계획 수립시 기준은?

- 사회적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음
- 다만,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및 기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 수립

Q 5. 우리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은 각 재정시스템(디브레인, e-호조, 에듀파인)에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내역 집계 가능
- 그 외 기관은 e-store 36.5 사이트(www.sepp.or.kr)의 [공공조달 정보] - [우선구매 실적입력]에 게시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DB를 다운받아 기관의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거래내역을 집계
- 기관의 재정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수기로 집계 필요

Q 6. 제출된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활용은?

-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또한, 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Q 7.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도 제출대상인지?

-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만 제출 대상이며,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은 미포함
- 단,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합동평가(행안부) 등을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별도 제출 필요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방법 관련

Q 8.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온라인으로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www.sepp.or.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확인·구매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으로는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스토어 36.5) 또는 공공구매 지원센터(1566-5365)에 문의하여 확인 및 구매할 수 있음

Q 9. e-store 36.5(www.sepp.or.kr)에서 구매(결제) 방법은?

- e-store 36.5(www.sepp.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상품을 검색하거나, 수시로 진행되는 기획전을 통해 추천상품 등을 구매가능
- 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및 무통장 입금(후불결제 포함) 가능

Q 10. e-store 36.5에서 기관카드로 결제시 재정시스템에 구매실적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 기관카드로 결제시 재정시스템에 자동으로 구매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카드사로 거래처가 인식되기 때문임)
- 따라서, 수기로 내역을 작성·취합하여 구매실적 제출 필요

Q 11. e-store 36.5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도 있는지?

- e-store 36.5(www.sepp.or.kr)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음

Q 12.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30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하며,
-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5천만원, 2인 견적 수의계약 1억원까지 가능

  * 구매 당시에 계약관련 법령 재확인 필요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관련

Q 13.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평가지표로 반영

Q 14.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평가시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만 대상
- 단,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도 포함

Q 15. 구매 당시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인증받은 경우?

- 유효한 인증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됨

  * 예시 : 2021.6.1 인증인 경우 2021.6.1부터 실적으로 인정

Q 16.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련 총구매액 산정 기준은?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액이 기준임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방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89

www.socialenterprise.or.kr